

## 제11장 출석과 결석

제38조(지각 및 조퇴)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개정 2017. 9. 1.)

제39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3. 3. 1., 2012. 8. 1., 2017. 1. 2., 2017. 9. 1., 2019. 1. 16., 2019. 6. 3.)

1. 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가. 부모, 배우자, 자녀: 7일
  - 나. 형제자매, 조부모 및 외조부모: 3일
  - 다. 4촌 이내 친척: 1일
2. 병사관계(신체검사 등): 해당기간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
4. 학과(전공), 대학(학부)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 학장이 확인한 기간
5. 본인의 결혼: 7일
6. 교육실습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7.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최대 2주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첨부)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은 「학칙」제9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9. 1.)

제40조(질병으로 인한 결석) (삭제 2017. 9. 1.)

제41조(결석계의 제출시기 및 장소) ① 결석계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3. 1., 2011. 12. 27., 2018. 3. 1., 2021. 9. 1.)

1. 결석사유 발생전후 14일 이내 신청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② (삭제 2011. 12. 27.)

③ 결석계를 접수한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교과목 담당교수가 EDWARD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2. 3. 1., 2011. 12. 27., 2017. 9. 1., 2021. 9. 1.)